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일시 : 2011년 5월 11일(수) 오후 3시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주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 목 차

I. 제정 배경 .....	1
II. 추진 경과 .....	2
III. 장애인방송 현황 .....	3
IV.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	5
1. 대상사업자의 구분과 의무수준 .....	5
2. 대상사업자별 편성목표 .....	7
3. 장애인방송 편성 적용 제외프로그램 .....	10
4.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확보 등 .....	11
5. 장애인방송 편성에 대한 평가 .....	12
V. 요약 .....	13
1. 사업자별 구분 및 목표부여 방식 .....	13
2. 사업자별 연도별 편성목표 .....	14
VI. 참고자료 .....	15
1. 현행 장애인 방송접근권 관련 법조문.....	15
2. 장애인방송 개요 및 현황 .....	16
3. 주요국의 장애인방송접근 정책 및 현황 .....	19

# I. 제정 배경

## □ 추진 배경

- 현행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방송 관련 규정이 있으나, 장애인방송 서비스(자막, 화면해설, 수화방송)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방송법은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 방송사업자별·장애인방송 서비스별 **적정한 목표수준이 없는 가운데** 개별 방송사의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정부의 지원액수에 따라 **제작수준이 유동적**

- 사회 통합과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장애인시청지원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 대상임에도 **안정적, 체계적인 방송접근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에 따라 시행령 등 법 개정 후속조치를 준비할 필요**

- ‘11년 5월중 개정 공포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에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통위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비할 필요

⇒ 고시제정 준비단계로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와 단계별 서비스수준과 편성목표를 담은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 제정 목적

-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통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
- 장애인방송 제공 사업자 및 장르의 확대를 통한 수용자의 정보욕구 충족
- 장애인방송 편성목표 제시를 통한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II. 추진 경과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및 고시(안) 추진 계획 수립('10년 2월)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10년 3~10월)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초안 마련('10년 9월)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방송사 의견수렴('10년 10월)
  - 1차(10월 12일) : 중앙 지상파 방송 4사 의견수렴
  - 2차(10월 14일) : 위성방송, SO, PP 등 유료방송사 의견수렴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10년 11월)
- 장애인 방송접근 관련 방송법 개정안 문방위 의결 ('11년 4월)

### III. 장애인방송 현황

#### □ 관련 법령

#####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 ⑧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추진안 : 법사위 회부, '11. 4. 22)

-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생략)-----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5월중 공포 예정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및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장애인방송 현황

- 중앙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률은 '10년 기준 자막 96%, 수화 5.1%, 화면해설 6.0%임
- 지역지상파 방송의 경우 장애인방송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화방송 위주이며 편성률이 미미함 (중앙지상파 방송으로부터의 수중계 프로그램 제외시)
- SO·PP 등 유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사만이 장애인방송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방송사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있음
  - 위성방송 및 IPTV는 자체적으로 장애인방송 편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 이유 등으로 지상파방송에서 편성하는 장애인방송을 재송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편성비율(2010년) >

방송 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유 형	비율(%)
중앙지상파 (5개사)	KBS1·2, MBC, SBS, EBS	자막	96.0
		수화	5.1
		화면해설	6.0
지역지상파 <sup>1)</sup> (33개사)	KBS 지역(총)국	수화	10.5
	지역 MBC	수화	4.7
	지역민방(OBS제외)	수화	2.9
	OBS	자막	53.9
PP (5개사)	YTN	수화	9.2
		자막	17.9
	희망복지방송	자막	100.0
		수화	100.0
		화면해설	18.8
	실버방송	자막	0.7
수화		1.7	
육아방송	수화	12.0	
	한국낚시채널	수화	1.1
SO(3개사)	금호, 나라, 서초	수화	10.3

1) 수중계를 제외한 자체제작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경우

## IV.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 1. 대상사업자의 구분 및 의무수준

#### □ 대상사업자 구분

-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제공의무의 부담방식에 따라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
  - 필수지정사업자는 당연히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로 하며, 고시의무사업자는 매년 방통위가 서비스 제공의무 여부를 고시하는 사업자로 함
- ※ 영국의 경우 공적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remit) 부담 사업자와 일반 유료방송사업자로 크게 구분되며, 공히 장애인방송제작물 의무 부담
- (필수지정사업자)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종편 채널사용사업자
- (고시의무사업자)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SO(직접사용채널대상)를, 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필수지정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방통위가 매년 지정고시

#### < 장애인방송 대상 사업자 구분 >

구분	플랫폼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
필수지정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직접사용 채널대상)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직접사용채널대상)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매출액은 매년 방통위가 발표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 ※ 회계상 사업자 순이익 실적을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순이익실적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시청점유율을 지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인된 점유율 실적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제외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수신료 배분수익 등 방송 송출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 의무부담 기본원칙 및 의무수준

- (의무부담 기본원칙)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방송의 공적책임 차원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 서비스 제공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단,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며, 연도별로 점진적 의무부담 확대
- (의무수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는 필수지정사업자가 고시의무사업자보다,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보다, 플랫폼사업자가 채널사용사업자보다 원칙적으로 높게 설정

### ※ 사업자별 의무수준 비교

- 의무부담 방식별 : 필수지정사업자 ≥ 고시의무사업자
- 전송방식별 : 지상파방송사업자 ≥ 유료방송(비지상파방송)사업자
- 플랫폼 유무별 : 플랫폼사업자 > 일반 채널사용사업자



## 2. 대상사업자별 편성목표

### □ 편성목표 구분

- 사업자별 편성목표는 방송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제시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시된 최종목표에 따라 연도별 편성목표를 자체적으로 제시하며, 지상파외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통위가 정하는 편성목표를 따름
  - 단, 현재 장애인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방송사는 전년도 대비 동등 또는 상향 수준으로 편성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11. 5월 개정 공포 예정)이 완료되고, 방송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및 고시) 개정이 현실화될 2012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음

<법령 개정 추진현황('11. 5.11 현재)>

법령	현행	개정안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 법사위 회부안('11. 4.22) >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u>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⑨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u>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u> ) ①~④ (생략) ⑤~⑧ (신설)	< 개정추진안 : 5월중 공포 예정 >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u>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u> ) ⑤ (생략)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 장애인방송 서비스 목표달성 시점 이후 시청자의 수요와 방송사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 서비스 편성목표 재설정

#### □ 필수지정사업자

- 필수지정사업자 중 지상파방송사는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 수화방송 5%를 기준으로 최종목표 설정

-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목표달성 시점 차등 적용

- 중앙지상파(KBS, EBS, MBC, SBS)는 2013년까지 최종목표 달성

- 지역지상파(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는 2014년까지 최종목표 달성

- ※ 지역지상파방송은 수중계 실적을 인정하며 자체제작을 포함한 장애인방송물 편성목표 산정

-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 수준으로, 위성방송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의 70% 수준으로 최종목표 설정

-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공히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2015년까지 최종목표 달성

-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장애인방송 편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 편성하고 있는 보도채널은 유예기간 동안 현행 수준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 고시의무사업자

- 고시의무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편성목표의 50~70% 수준에서 연도별 편성목표를 제시

- 방통위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정 고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해당년도의 편성목표 준수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최종목표를 지상파 최종목표의 70% 수준으로 하고, 유예기간(1년)을 부여
- 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지상파 최종목표의 50%수준(자막은 70%)으로 하고, 유예기간(1년)을 부여
-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 또는 장르의 특성상 장애인방송물 제작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무부담 범위 조정 가능
- ※ 편성목표 부여가 어려운 플랫폼사업자의 VOD서비스는 편성대상에서 잠정 제외
- ※ 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국민들의 방송프로그램 접근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비 의무 강화

<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편성목표 산정 원칙 >

구분	플랫폼	채널사용사업자	부가사항
필수지정 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직접사용채널대상)	보도·종편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상파는 2013년까지 목표 달성</li> <li>○ 지역지상파는 2014년까지 목표 달성</li> <li>○ 보도·종편 PP는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2015년까지 목표 달성</li> <li>○ 위성방송사업자는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2015년까지 지상파사업자의 70% 수준으로 목표 설정</li> </ul>
고시의무 사업자	SO (직접사용채널대상)	일반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는 지상파사업자의 70%, 일반PP는 50% (자막은 70%) 수준으로 목표 설정</li> <li>○ 공히 유예기간 1년 부여</li> </ul>

### 3. 장애인방송 편성의 적용제외 프로그램

#### □ 적용제외 대상

- 기술적 어려움, 저작권 문제, 제작이 곤란한 특수한 상황 등을 적용제외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방송 편성대상에서 제외됨
  - ① 기술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예) 발레 등 공연실황프로그램, 악기 연주나 영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등
  - ② 저작권 문제로 인해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예)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
  - ③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 발생시

#### ※ 현재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인정되는 적용제외 프로그램

- 자막방송·수화방송 적용제외 프로그램
  - 기술적으로 자막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 대부분이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프로그램
  - 대부분이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프로그램
- 화면해설방송 : 적용제외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 없음

#### □ 적용제외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

- 적용제외 프로그램은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자료 제출시 소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소명도 가능

※ 적용제외 프로그램 선정시 제외 프로그램을 명시하는 방식(List-up)과,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Reference)이 있으나, 다매체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리스트의 수시 변동이 불가피하므로 기준을 제시하는 Reference방식을 채택

## 4.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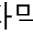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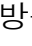




### □ 장애인방송물 재송신시 누락 및 변경방지

- 한 방송사가 제작한 장애인방송물<sup>2)</sup>을 다른 방송사가 재송신하는 경우, 재송신하는 방송사는 해당 장애인방송물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송출해야 함
  -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한 방송사 또한 타 방송사에 그 제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내용상의 누락이나 형식의 변경없이 제공해야 함
- ※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장애인방송물을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 플랫폼사업자가 재송신하는 경우에 적용

### □ 장애인방송물 제작시 시청편의성 고려

-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의 폰트, 크기, 위치, 색상, 딜레이 타임(자막의 경우), 해설의 범위 및 깊이(화면해설의 경우) 등 장애인 시청편의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향후 방통위에서 별도의 기준 제정 예정

### □ 이용방법 안내 등 인지도 제고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확대
  - 방송사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방송 고지 의무, 일간신문의 방송프로그램 안내란을 통한 고지 요청
  - ※ 장애인방송 고지의 예
    - 자막방송 : , ,  / 수화방송 : ,  / 화면해설방송 : , DV, D
  -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는 캠페인프로그램 운영
  - ※ '07년부터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는 캠페인프로그램을 지상파방송사 등에서 방영한 바 있음

2) 폐쇄자막, 수화, 화면해설 신호가 방송프로그램에 삽입된 방송물

## 5. 장애인방송 편성에 대한 평가

### □ 분기별 실적 점검 및 결과 공표

-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편성실적을 분기별 점검
-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분기별 점검결과 공표
  - ※ 방송사업자는 연말 최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무대상사업자, 편성목표 및 장애인방송의 실질적 이용 증대를 위한 요구사항 등은 최종 실적평가지 반영

### □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평가 강화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및 방송평가지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평가 강화(배점 상향 등) 추진

## V. 요약

### 1. 사업자별 구분 및 목표부여 방식

사업자 구분	세부사업자	필수지정/고시의무	유예기간	기산점	달성시점
지상파	중앙 지상파	필수지정	x	2012	2013
	지역 지상파				2014
유료방송 (플랫폼)	SO	고시의무	1년	2013	2015
	위성방송	필수지정	1년	2013	2015
유료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보도·종합편성 PP	필수지정	1년	2013	2015
	여타 PP	고시의무	1년	2013	2015

※ 지상파를 제외한 사업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기산점	디지털 전환		디지털전환후 3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앙지상파 (KBS, EBS, MBC, SBS)



지역지상파(KBS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유료방송군 (위성방송, SO, PP)



## 2. 사업자별 연도별 편성목표 (단위: %)

### o 중앙 지상파방송사(KBS, EBS, MBC, SBS)

년도/유형	2012	2013
자막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100
화면해설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10
수화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5

### o 지역 지상파방송사

년도/유형	2012	2013	2014
자막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100
화면해설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10
수화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5

### o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

년도/유형	2012	2013	2014	2015
자막	유예기간	30	60	100
화면해설		4	7	10
수화		2	4	5

### o 위성방송SO(직접사용채널 대상)

년도/유형	2012	2013	2014	2015
자막	유예기간	30	50	70
화면해설		4	6	7
수화		2	3	4

※ SO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방통위 고시 사업자임

### o 채널사용사업자

년도/유형	2012	2013	2014	2015
자막	유예기간	30	50	70
화면해설		2	4	5
수화		2	3	3

※ PP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방통위 고시 사업자임



## V. 참고자료

### 1. 현행 장애인 방송접근권 관련 법조문

법률	시행령
<p>○ <b>방송법 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b></p> <p>⑧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u>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lt; <b>법사위 회부안('11. 4.22)</b> &gt;</p> <p>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u>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b>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b></p> <p>- <u>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u>재난방송프로그램</u></li> <li>2. 「<u>장애인복지법 시행령</u>」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li> <li>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u>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u></li> <li>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li> </ol>
<p>○ <b>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b></p> <p>③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u>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④, ⑤ (생략)</p> <p>⑥ - (생략) -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b>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추진안</b> (5월중 개정공포 예정)</p> <p>①, ②, ③, ④, (생략)</p> <p>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li> <li>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li> <li>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및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li> </ol> <p>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⑦, ⑧ (생략)</p>

## 2. 장애인방송의 개요 및 현황

### 가. 장애인방송 개요

#### □ 장애인방송의 의의

-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막방송<sup>3)</sup>·수화방송·화면해설방송<sup>4)</sup> 등 시청편의 서비스

#### □ 장애인방송의 종류

-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막방송·수화방송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면해설방송이 있음

※ 지상파방송의 경우 자막방송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수화방송은 주로 뉴스프로그램에서, 화면해설방송은 주로 드라마 재방송 위주로 시행

#### □ 장애인방송의 연혁

- 자막방송은 '96년 (구)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 4사, 가전업체 간에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99년부터 지상파3사(KBS·MBC·SBS)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시작 (EBS : '00년)
- 수화방송은 '79년에 KBS에서 최초 실시한 바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제한적으로 실시
- 화면해설방송은 '01년에 KBS와 MBC가 시험방송을 시작하였고, 본방송 서비스는 MBC는 '01년, KBS는 '03년부터 개시
- 2006년부터 (구)방송위원회에서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개시

3)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으로서 일반 TV화면에서는 자막이 보이지 않고 디코더(Decoder) 장치가 부착된 화면에서만 자막을 수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라고도 함

4)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시청취 수단으로, TV화면에 보여지는 움직임이나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DVS(Descriptive Video Service)라고도 함

## 나. 장애인방송 현황

### □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 편성비율은 '06년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자막 64% → 96%, 수화 3.6%→5.1%, 화면해설 4.6%→6.0%)

【 '06~'10년간 지상파방송사 장애인방송 편성률 변화 】

(단위 : %)

방송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자막방송	58	78	92.6	94.6	96	96.5
수화방송	3.6	2.9	3.8	4.0	5.1	5.2
화면해설방송	4.7	4.9	5.3	5.5	6.0	6.2

- '10년 중앙지상파방송의 경우, 자막방송은 96.0% 편성되고 있으나,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의 편성률은 각각 5.1%, 6.0%임

【 2010년 지상파방송사 장애인방송 편성률 】

(단위: %)

방송유형	KBS1	KBS2	MBC	SBS	EBS	평균
자막방송	99.0	100.0	92.1	94.7	94.2	96.0
수화방송	8.4	0.9	4.3	5.7	6.2	5.1
화면해설방송	4.1	8.7	6.4	4.1	6.6	6.0

- 그러나 지역지상파 및 SO·PP 등 유료방송의 경우 편성률이 미미하며 대부분이 수화방송 위주임

### □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현황

- '06년부터 지상파방송 4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SO 및 PP를 대상으로 방송사와 정부간 매칭형태로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중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15억	30억	30억	30억	30억	33억

## □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방송사

- '10년 지상파, 유료방송 등 46개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 하였으며, '11년에는 53개사를 지원

< 연도별 지원방송사 현황 ('06~'11)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중앙) 지상파	5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지역 지상파	KBS 지역 (총)국	3개사	4개사	6개사	11개사	17개사
		부산, 대구, 청주	부산, 대구, 창원, 청주	부산, 대구, 창원, 청주, 대전, 전주	부산, 대구, 창원, 전주, 충청, 제주,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창원,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울산, 포항, 순천
	지역 MBC	1개사	4개사	8개사	10개사	12개사
	부산	부산, 대전, 전주, 삼척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삼척, 원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삼척, 강원, 제주, 충주, 진주	부산, 대전, 울산, 삼척, 강원, 제주, 충주, 광주, 목포, 여수	부산, 대전, 울산, 삼척, 강원, 제주, 충주, 진주, 광주, 목포, 여수
지역 민방	2개사	8개사	10개사	10개사	10개사	10개사
	전주, 청주	경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청주, 강원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제주, 강원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청주, 제주, 강원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청주, 제주, 강원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청주, 제주, 강원
SO				2개사	3개사	6개사
				금호, 나라	금호, 나라, 서초	금호, 나라, 서초, 새로넷, 충북, CJ헬로비전
PP	1개사	2개사	1개사	4개사	5개사	3개사
	복지방송	복지방송, 육아방송	복지방송	복지, 실버, 육아, YTN	복지, 실버, 육아, YTN, 님시채널	복지, 육아, YTN
합계	9개사	22개사	28개사	37개사	46개사	53개사

### 3. 주요국의 장애인 방송접근 정책 및 현황

#### 가. 영국

##### □ 개요

- 법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방송접근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위임한 'TV접근서비스규칙'을 통해 Ofcom이 관리, 감독
- 관련 법규
  -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에 공공기관의 '장애인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 ; DES)' 수립 의무화('05)
  - 통신법(Communication Act '03) 303조에서 Ofcom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TV접근서비스 제공 규칙의 제정, 점검 및 개정의무를 부여

##### □ 장애인방송 정책현황

- Ofcom이 제정한 'TV접근서비스 제공규칙(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에 방송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막·수화·화면해설 비율과 목표치를 제시
    - 예외 및 면제의 기준, TV접근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등을 규정
  - Ofcom이 TV접근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채널목록을 매년 공표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
    - 시청점유율(audience share)와 관련 매출액(relevant turnover)을 기준으로 TV접근서비스 제공의무 대상사업자를 선정
- ※ 2011년의 경우 총 70개 채널에 TV접근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

□ 방송사업자의 TV접근서비스 목표

- 모든 BBC채널은 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화 5%의 접근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ITV와 채널4는 90%, 10%, 5% Five와 S4C1은 80%, 10%, 5%를 제공해야 함
- 기타 채널에 적용되는 목표치는 Ofcom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하며,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 적용되는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기타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목표

<단위: %>

서비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막	10	10	35	35	60	60	70	70	70	80
수화	1	1	2	2	3	3	4	4	4	5
화면해설	2	4	6	8	10	10	10	10	10	10

## 나. 일본

### □ 개요

- 장애인방송 제작이 비강제적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총무성이 행정 지침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방송사가 동 지침을 준수

### □ 관련 법규

- '96년 '방송법'에 방송사업자의 시청각장애인용 자막프로그램 및 해설프로그램 방송 노력의무<sup>5)</sup> 규정
- '97년 '신체장애자법'에 동 사업 추진 및 정보통신연구기구의 자막, 해설프로그램 제작사업을 위한 조성금<sup>6)</sup> 지원 근거 규정

### □ 장애인방송 정책현황

#### <1> 행정지침을 통한 자막방송 제작 유도 및 실태조사

- '07년 오전 7시에서 오후 12시까지 방송하는 자막 삽입이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sup>7)</sup>을 대상으로 '17년까지 모두 자막을 삽입하고, 10%에 화면해설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지침을 통보

<자막방송 지침('07.10)>

	보급목표의 대상		목표
	대상시간	대상 프로그램	
NHK	7시~24시	자막 부여가 가능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	2017년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 모두에 자막부여
지상파 민방,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			2017년도까지 대상 방송프로그램 모두에 자막 부여
통신위성 방송, 유선TV 방송, 전기통신이용방송			되도록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 부여

5)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자막프로그램·해설프로그램을 가급적 많이 방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송법 제3조의2 제4항)

6) '93년에 최초로 위성방송수신대책기금의 운용이익을 원금으로 제작비를 조성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97년부터 안정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일반회계에서도 정보통신연구기구에 조성금이 교부되어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

7) 자막부여 가능한 방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① 기술적으로 자막을 붙일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 ②외국어 프로그램, ③대부분이 악기연주의 음악프로그램, ④권리처리상의 이유 등에 의해 자막을 붙일 수 없는 방송 프로그램

<화면해설 방송 지침('07.10)>

	보급목표의 대상		목표
	대상시간	대상프로그램	
NHK	7시~24시	권리처리 상의 이유 등에 의해 해설을 할 수 없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2017년도까지 대상의 방송 프로그램의 10%에 해설 부여
지상파 민방,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			2017년도까지 대상의 방송 프로그램의 10%에 해설 부여
통신위성방송, 유선TV 방송, 전기통신이용 방송			되도록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해설 부여

- 총무성은 '97년부터 매년 자막방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0년부터는 방송사의 자막방송 시간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등 추이를 점검

<NHK 및 민방키스태이션 5국의 자막확충계획(2008년 책정)>

방송사업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HK	53.3%	57%	62%	69%	74%	79%	84%	89%	94%	100%
니혼TV	86.5%	87.8%	89.0%	90.3%	91.6%	92.8%	94.1%	95.4%	96.7%	100%
TBS	76.3%	79.1%	81.8%	84.2%	87.6%	90.3%	93.1%	94.7%	97.4%	100%
후지TV	86.8%	88.2%	88.7%	91.3%	92.6%	93.7%	94.8%	96.8%	98.9%	100%
TV아사히	90.9%	91.6%	92.8%	93.5%	96.4%	96.8%	97.2%	97.8%	98.5%	100%
TV도쿄	81.4%	82.8%	84.2%	85.5%	86.9%	89.5%	92.1%	94.8%	97.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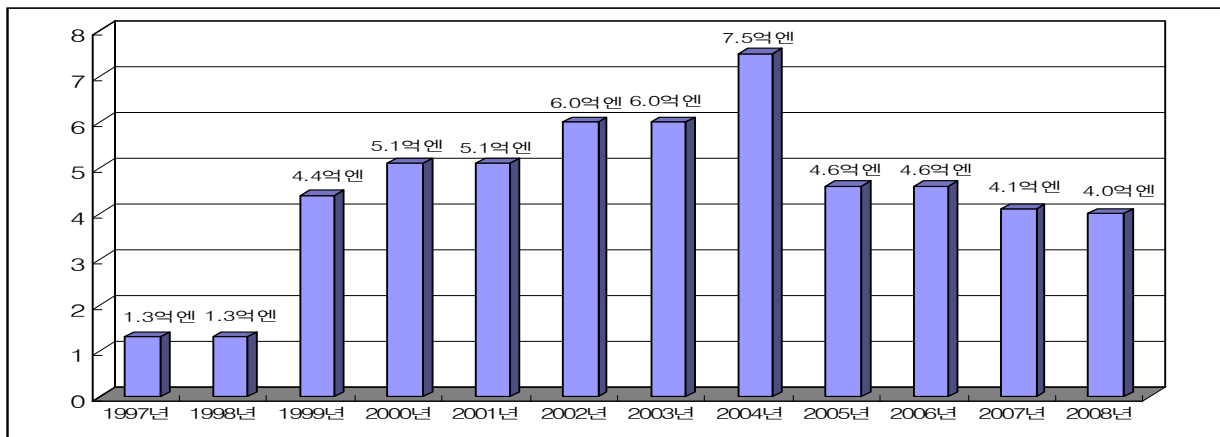
주 1) 각사의 자막부여 가능한 방송시간(주)은 NHK:7080분, 니혼TV:3788분, TBS:4392분, 후지TV:4355분, TV아사히:4388분, TV도쿄:4989분(7시부터 24시까지 17시간은 1주간 7140분).

- '08년 현재 지상파사업자의 96%(122/127)가 자막방송 제작에 참여

<2> 장애인 통신방송 개발 지원금 조성

- '97년부터 독립 행정법인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장애인 통신방송 개발지원금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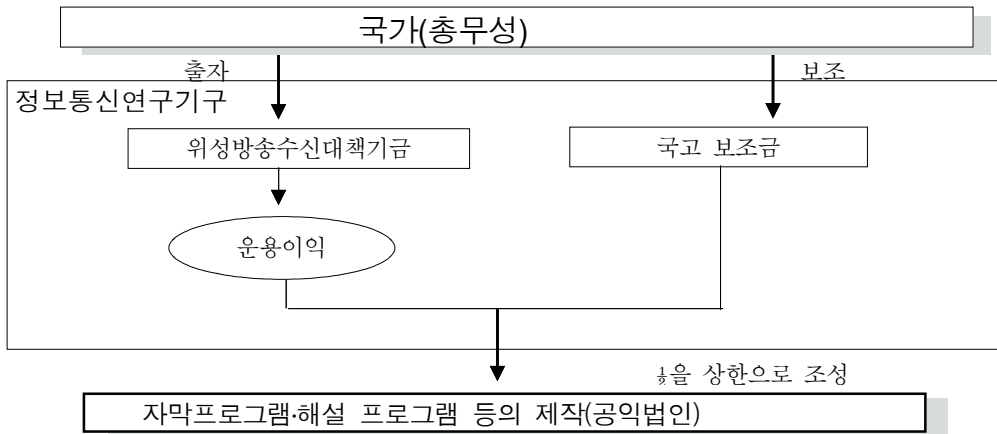
< 장애인용 통신방송 개발 지원액 추이 >





- '97년부터 2008년까지 51억 엔을 조성하였으며, '09년 현재 99개사에 조성금 지원

< 일본의 통신방송 개발조성금 제도 개요 >



<3> 장애인 지원 시스템 연구개발

- '장애자 등 전기통신설비 접근성 지침' 공표('00)
-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자막화하는 자막제작 시스템, 보청지원시스템, 화속변환장치, 고속입력기술 등 개발
-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저 인터페이스의 고도화를 1단계('11~'16), 2단계('17~'26)로 나누어 추진

## 다. 프랑스

### □ 개요

-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구체적인 실행은 시청각최고회의(CSA<sup>8</sup>)와 방송사와의 협약으로 진행

### □ 관련 법규

- '86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장애인의 TV방송접근권이 처음으로 법률적으로 보장
- '05년 '장애인법'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법은 장애인관련 조항들을 신설('05)

※ 커뮤니케이션법 제74조(2005년 개정)

“연 평균 시청률이 전체 TV시청자의 2.5%를 초과하는 방송사들은 장애인의 시민생활, 참여, 기회 및 권리의 평등을 위해서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이 공포된 이후부터 향후 5년 동안 광고와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청각 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 장애인방송 정책 추진현황

- 공영방송사의 경우 '84년부터 윤리강령에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시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00년부터 자체 쿼터제를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
- 민영방송사의 경우 '02년부터 시청각최고회의(CSA)가 재허가 협약에 의무 쿼터<sup>9</sup>)를 포함시켜 장애인방송을 제도화

※ 2005년 커뮤니케이션법 제33-1조 제3항

“청각장애인이거나 난청인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하고, 특히 주요 시청시간대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청각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 비율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8)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라디오, TV 등 매체를 규제

9) 2002년 들어 '문화-장애국가위원회'에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자막방송의 쿼터의무를 포고

- 시청각최고회의(CSA)는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접근권 보호를 위한 현황 조사, 협의, 규제, 권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 모든 방송사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의무사항의 실천여부를 매년 CSA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장애인법 제81조(2005년 2월 11일)  
 “청각장애인이거나 난청인에게 전송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CSA와 정부가 매년 조사한다.”

- CSA는 시각장애인의 시청각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화면해설방송 현장<sup>10)</sup>을 채택('08.12)하여 화면해설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칙 및 의무사항을 규정

< 2007, 2008년 프랑스의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현황 >

		자막		화면해설
		2007	2008	
아날로그 지상파	TP1	60% (4,727시간)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1은 상업방송 중 유일하게 월1개의 영화를 화면해설방송으로 함</li> <li>- Arte(예술방송)은 월 1개의 픽션물 혹은 다큐멘타리물을 화면해설방송으로 함</li> <li>- 화면해설방송은 의무규정이 없었음. 2009년 3월 5일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연시청률 2.5% 이상의 지상파 방송들은 주요 시청시간대에 화면해설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따라서 방송사들은 CSA와 협약을 맺음</li> </ul>
	France2	59% (4,814시간)	63%	
	France3	67% (5,117시간)	71%	
	France5	48% (3,862시간)	59%	
	M6	33% (2,757시간)	50%	
	Canal+ 유료영화 전문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방송을 포함하여 86개 필름</li> <li>- 268개 필름: 오리지널 영화 자막처리</li> </ul>		
디지털 지상파	W9	9% (778시간)	49%	
	NRJ12	5.5%(483시간)	10%	
	NT1	3.6%(299시간)	15%	
	Direct8	1.75%(153시간)		
	TF6	3%(263시간)		

10) 화면해설 방송의 객관성 기준, 이용자 존중, 윤리적 기준, 해설방법 등을 명시

## 라. 미국

### □ 개요

-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사의 이행을 규제, 감독

### □ 관련 법규

- '96년 미국 의회는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Video Programming Accessibility** 713조를 추가하여 폐쇄자막이 제공되어야 하는 일정과 규칙을 명시

### □ 장애인방송 정책 추진현황

- '97년 FCC는 자막방송 확대 제공을 요건으로 하는 이행계획을 수립
  - '98년(디지털은 '02년)이후 방송된 모든 아날로그 프로그램에 자막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 ※ 이전 1년 동안 총 매출액 중 자막방송 비용이 2%를 넘는 경우와 이전 1년 동안 3백만 달러 이하의 매출액인 채널은 자막방송 제공의무 면제
- 자막방송에 대한 연도별 달성목표
  - '06. 1. 1이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100% 자막과 함께 제공
  - '08. 1월부터는 '06. 1. 1이전에 제작된 프로그램도 75% 이상의 자막을 제공할 의무
    - ※ 스페인어로 된 프로그램의 연도별 목표도 별도로 있음
- FCC는 시청각장애인들의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sup>11)</sup>을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와 방송 접근성 강화 정책과 실행스케줄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11) 장애인방송 편성률, 사업자 규모, 관련 시장 및 수혜자 규모 등

## 주요 국가 장애인방송 정책 비교표

국가	장애인방송 개요	관련 법규	추진현황	비고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 서비스제공의무 규정</li> <li>○ Ofcom이 관리,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법('03)</li> <li>- TV접근서비스규칙</li> <li>○ 장애인차별금지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접근서비스규칙을 통해 방송 사업자가 지켜야할 편성률과 목표치 제시</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 비강제조항(노력 의무)</li> <li>○ 총무성이 행정지침을 통해 관리,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96)</li> <li>○ 신체장애자법('93)</li> <li>- 정보통신연구기구의 '장애인 통신방송 개발지원금' 조성 근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이 방송사업자에게 행정 지침을 통해 자막 및 화면해설 방송 제작을 유도</li> <li>- 제작비의 1/6~1/2 지원</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의무사항</li> <li>○ 시청각최고회의(CSA)와 방송사간 협약 체결을 통한 관리,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케이션법('06)</li> <li>○ 장애인법('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강령에 의한 자발적 실시('84~)</li> <li>○ 장애인방송 제작 자체쿼터제('00~)</li> <li>○ 민영방송 재허가협약에 의무 쿼터 포함('02~)</li> <li>○ 장애인방송 관련 CSA 역할: 조사, 협의, 규제, 권고</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의무사항</li> <li>○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사 규제,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법('34) 제713조</li> <li>- 자막방송 제공 일정 및 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C</li> <li>- 장애인방송 이행계획 수립</li> <li>- 방송접근권 조사, 의회 보고</li> </ul>	